

의안번호	제 487 호
의 결 연 월 일	2010년 4 월 일 (제 289 회)

충청북도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

제 출 자	충 청 북 도 지 사
제출연월일	2010년 4 월 6 일

법무통계담당관 심사를 마침

충청북도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

의안 번호	487
----------	-----

제출연월일 : 2010년 4월 6일
제출자 : 충청북도지사

1. 제안사유

- 지난 '99. 5. 27 도로교통법 시행령(제11조의2제3항)의 개정으로 시·군 공무원이 단속한 불법주·정차 위반차량에 대한 견인비용 산정기준을 시·군의 조례로 정하도록 함.
※ (개정전) 특별·광역시·도 → (개정후) 특별·광역시 또는 시·군
- 도내 12개 시·군의 조례 제정이 완료('04. 1. 15)되어 불필요해진 충청북도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

2. 주요내용

- 충청북도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

3. 의안전문 : 붙임

4. 신·구조문 대비표 : 해당없음

5. 관계법령 발췌 : 붙임

충청북도 조례 제 호

충청북도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

충청북도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관련법령 발취 요약

<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 >

□ 개정전

제11조의2(보관한 차의 반환등)

③ 제1항의 소요비용의 산정기준에 관하여는 특별시·광역시·도의 조례로 정한다.

□ 개정후

제11조의2(보관한 차의 반환등)

③ 제1항의 소요비용의 산정기준에 관하여는 특별시·광역시 또는 시·군(광역시의군을 제외한다)의 조례로 정한다. <개정 1999. 5. 27>

부칙 <제16371호,1999.5.27>

①(시행일)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②(소요비용의 산정기준에 관한 경과조치) 경찰서장 또는 시장등이 보관한 차를 반환하는 때의 소요비용의 산정기준은 제11조의2제3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시·군 조례가 제정·시행될 때까지는 종전의 도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.

관련법령 발췌

□ 도로교통법 [1999.01.29 (법률 5712호)]

제31조(정거·주거위반에 대한 조치)

① 제28조 내지 제30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정차하거나 주차하고 있는 차가 교통에 위험하거나 방해될 염려가 있는 때에는 경찰공무원 또는 시장등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임명하는 공무원(이하 "시·군공무원"이라 한다)은 그 차의 운전자 또는 관리책임이 있는 사람에 대하여 정차나 주차방법의 변경 또는 그곳으로부터의 이동을 명할 수 있다.<개정 1990·8·1, 1997·8·30>

② 제1항의 경우 그 차의 운전자 또는 관리책임이 있는 사람이 현장에 없는 때에는 경찰서장 또는 시장등은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한도안에서 그 차의 주차방법을 스스로 변경하거나 변경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, 부득이한 경우에는 관할경찰서 또는 경찰서장이나 시장등이 지정하는 곳으로 이동하게 할 수 있다.<개정 1990·8·1, 1997·8·30>

③ 경찰서장 또는 시장등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차위반차를 관할경찰서 또는 경찰서장이나 시장등이 지정하는 곳으로 이동시킨 경우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보관하여야 하며 그 사실을 차의 사용자(소유자 또는 그 소유자로부터 차의 관리에 관한 위탁을 받은 사람을 말한다. 이하 같다) 또는 운전자에게 신속히 알리는 등 반환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.<개정 1990·8·1>

④ 제3항의 경우 차의 사용자 또는 운전자의 성명·주소를 알 수 없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고하여야 한다.

⑤ 경찰서장 또는 시장등은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반환에 필요한 조치 또는 공고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차의 사용자 또는 운전자가 그로부터 1월이 지나도 반환을 요구하지 아니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차를 매각 또는 폐차할 수 있다.<신설 1992·12·8>

⑥ 제2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주차위반차의 이동·보관·공고·매각 또는 폐차등에 소요된 비용은 그 차의 사용자의 부담으로 하고, 그 비용의 징수에 관하여는 행정대집행법 제5조와 제6조의 규정을 적용한다.<개정 1992.12.8>

제31조의2(거의 견인 및 보관업무등의 대행)

① 경찰서장 또는 시장등은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견인하도록 한 차의 견인·보관 및 반환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필요한 인력·시설·장비등 자격요건을 갖춘 법인·단체 또는 개인(이하 "법인등"이라 한다)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.<개정 1995.1.5>

② 경찰서장 또는 시장등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차의 견인·보관 및 반환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당해 업무의 수행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와 교육을 명할 수 있다.<개정 1995.1.5>

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차의 견인·보관 및 반환업무를 대행하는 법인등이 갖추어야 할 인력·시설·장비등 자격요건 그밖의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<개정 1995.1.5>

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차의 견인·보관 및 반환업무를 대행하는 법인등의 담당 임원 및 직원은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의 적용에 있어서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.<개정 1995.1.5>

□ 도로교통법 시행령 [1999.05.27 (대통령령 16371호)]

제11조의2(보관한 차의 반환등)

① 경찰서장 또는 시장등이 보관한 차를 반환하는 때에는 법 제31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차의 사용자 또는 운전자로부터 견인·보관 또는 공고 등에 소요된 비용(이하 "소요비용"이라 한다)을 징수하고 범칙금납부통고서 또는 과태료납부고지서를 교부한 후 인수증을 받고차를 반환하여야 한다.<개정 1993.7.13, 1995.7.1, 1996.9.24>

② 경찰서장 또는 시장등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요비용을 징수하고자 하는 때에는 납부하여야 할 금액·납부기한·납부장소를 명시한 문서에 의하여 고지하여야 한다.

③ 제1항의 소요비용의 산정기준에 관하여는 특별시·광역시 또는 시·군(광역시의군을 제외한다)의 조례로 정한다.<개정 1992.3.14, 1995.7.1, 1998.12.31, 1999.5.27>

부칙 <제16371호,1999.5.27>

①(시행일)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②(소요비용의 산정기준에 관한 경과조치) 경찰서장 또는 시장등이 보관한 차를 반환하는 때의 소요비용의 산정기준은 제11조의2제3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시·군 조례가 제정·시행될 때까지는 종전의 도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.

□ 도로교통법 시행령 [1999.04.30 (대통령령 16271호)]

제11조의2(보관한 차의 반환등)

① 경찰서장 또는 시장등이 보관한 차를 반환하는 때에는 법 제31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차의 사용자 또는 운전자로부터 견인·보관 또는 공고 등에 소요된 비용(이하 "소요비용"이라 한다)을 징수하고 범칙금납부통고서 또는 과태료납부고지서를 교부한 후 인수증을 받고 차를 반환하여야 한다.<개정 1993.7.13, 1995.7.1, 1996.9.24>

② 경찰서장 또는 시장등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요비용을 징수하고자 하는 때에는 납부하여야 할 금액·납부기한·납부장소를 명시한 문서에 의하여 고지 하여야 한다.

③ 제1항의 소요비용의 산정기준에 관하여는 특별시·광역시·도의 조례로 정한다.<개정 1992.3.14, 1995.7.1, 1998.12.31>